

지방재정개혁 및 자동차세 개정(안)에 따른 경기도 대응 방안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혁으로 6개 불교부단체 7,780억 원, 경기도 보통교부금 약 3,000억 원 감소, 자동차세(시군세)개정(안)으로 31개 시군 2,170억 원 감소 예상

- 지방재정개혁(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 및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전환)으로 도내 6개 교부세 불교부단체는 7,780억원의 세수 감소 전망
 -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안에 따라 6개 불교부 단체는 5,244억원,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전환에 따라 3,275억원 감소 전망(경기도 전체 재정변화는 없음)
 - 상기 제도 변화로 나머지 25개 시군은 재정이 증가하지만, 경기도 보통교부금의 총합은 약 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기획재정부는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현 배기량에서 차량가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으로 이로 인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동차세는 총 2,170억원 감소 추정
 - 세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도내 외산차의 세수는 1,166억원 증가하나, 국산차의 세수는 4,225억 감소(추정세액 기준)하여, 총 징수액은 2,170억원 감소 추정
 - 자동차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도 세수감소에 따라 651억원 감소 추정

지방재정개혁과 자동차세 개정으로 경기도는 총 5,821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며, 화성시 등 6개 불교부단체의 감소액은 9,06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시군별 세수 감소분은 화성시가 3,014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수원(1,862억원), 용인(1,845억 원), 성남(1,416억 원) 등 4개 시의 세수 감소가 1천억 원 이상

경기도의 대응 방안

- 세계개편을 통해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의 우선적 축소가 예견되므로 17개 지자체와 연계하여 공동대응방안 적극 추진
- 현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경기도와 타 지자체와의 갈등구조에서 탈피하여, 국가재원의 지방 이양으로 논쟁의 방향을 전환
- 자동차가격 기준 자동차세 부과 개정 목표는 공감하나, 현 자동차세의 총 규모는 유지할 수 있도록 세율 인상을 적극 건의
-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혹은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협의하는 절차 마련 촉구

CONTENTS

- I. 지방재정개혁 및 자동차세 개정(안)의 기본내용
- II. 개정의 주요 쟁점
- III. 경기도 대응 방안

I. 지방재정개혁 및 자동차세 개정(안)의 기본내용

□ (지방재정개혁) 중앙정부는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방안'(4. 22.)을 마련

- 그간의 지방재정개혁을 통해 재정자립도와 지방채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중앙정부의 판단
 - 동종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6%p에 이르고, 75개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
 - 예를들어 '16년 기준 광역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울 본청이 83%에 이르고 있으나, 최저인 전남 본청은 18.4%에 불과한 실정
-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13년 이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정 시·군에 편중되어 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법인지방소득세는 '13년 9.3조원에서 '15년 12.8조원(개인분 7.7조원, 법인분 5.1조원)으로 동기간 연평균 18.8%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자치단체간 최저 대비 최고 비중이 '14년 154.4배에서 '15년 325배로 증가하여 시·군의 편중 현상이 심화(화성 3,023억원, 연천 9.3억원)
- 지방재정개혁(안)으로 인해 경기도 내 일부 자치단체는 심각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道 전체적으로도 25개 시군의 재정증가로 인한 보통교부금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배분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경기도 전체적 관점에서 재정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나, 재정자립도의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라는 의도하지 않은 정책효과가 예견됨

□ (자동차세) 중앙정부는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시군세)를 현행 차량의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 현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과거 외산차량이 소수인 상황에서는 배기량과 차량가격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최근 외산차량의 증가 및 저배기량·고성능차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상관성이 크게 낮아짐
- 그러나 자동차도 주택과 같이 재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위면적(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과거 '15년 8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배기량 단위에서 가격 단위로의 자동차세 개정안을 발의 하였으나 임기만료폐기됨

〈표 1〉 국산/외산 차량별 개정 전·후 세액 비교(예시)

국산				외산			
차량별	차량가격	개정전 세액	개정후 세액	차량별	차량가격	개정전 세액	개정후 세액
현대 엑센트 (1368CC)	11,140,000	355,680	65,338	미니쿠퍼 (1500CC)	29,700,000	390,000	358,150
현대 소나타 (1999CC)	22,140,000	519,740	210,730	BMW 520d (1995CC)	63,300,000	518,700	1,316,250
현대 제네시스 (3300CC)	45,650,000	868,920	770,900	아우디 A8L (2967CC)	126,700,000	771,420	3,376,750
현대 EQ900 (3778CC)	71,700,000	982,280	1,589,250	벤츠 S500 (4663CC)	230,000,000	1,212,380	6,734,000

*주 1 : 자동차 경과연수 고려하지 않았고, 기본음선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함

- '16년 5월 말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자동차세 개정을 담고, 20대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
 - 자동차세 개정은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정부와 국회 모두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과거와 달리 연내 개정이 예상됨
- 이에 자동차세 개정에 따른 시군의 추가 재원 확보 및 복지예산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규모를 추정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 형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변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

II. 개정의 주요 쟁점

1 지방재정개혁으로 도 및 31개 시군의 예산규모 변화는?

□ 지방재정개혁(안)에 따르면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총액은 변화가 없으나, 조정교부금의 우선 배분 대상인 6개 불교부단체는 세수 감소가 예상

- 지방재정개혁(안)에서는 지방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과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을 제시
- 조정교부금의 변화로 인해 경기도의 총 재정의 변화는 없으나, 6개 불교부단체(수원, 성남, 용인, 고양, 과천, 화성)는 5,244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
 - 지방재정개혁(안)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배분기준 변경과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에 대한 폐지 등을 통한 개선안을 제시
 -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 ②에서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는 일반조정교부금 중에서 해당 시·군이 재원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개선(안)은 인구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이는 방향

〈표 2〉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안)

구분	현행	변경
기여액(재원)	인구50만 이상 : 도세징수액의 47% 인구50만 미만 : 도세징수액의 27%	
배분방식	인구수(50) 도세징수실적(30) 재정력역지수(20)	인구수(40) 도세징수실적(30) 재정력역지수(30)
불교부단체 우선 배분	기여액의 90%	폐지

- 특례 폐지에 따라 6개 불교부단체는 총 5,244억 원의 세수 감소

〈표 3〉 조정교부금 배분특례 폐지 시 세수 변화

구분	현행(A)	기준변경(B)	차액(B-A)	구분	현행(A)	기준변경(B)	차액(B-A)
수 원	2,590	1,874	△716	시 흥	567	803	236
성 남	2,545	1,665	△880	군 포	439	621	182
고 양	2,312	1,635	△677	의 왕	306	433	127
과 천	874	496	△378	하 남	422	598	176
용 인	2,668	1,692	△976	파 주	590	835	245
화 성	3,007	1,390	△1,617	이 천	418	592	174

구분	현행(A)	기준변경(B)	차액(B-A)	구분	현행(A)	기준변경(B)	차액(B-A)
의정부	611	865	254	안 성	360	510	150
안 양	724	1,026	302	김 포	525	744	219
부 천	982	1,390	408	광 주	453	643	188
광 명	571	809	238	양 주	417	591	174
평 택	716	1,014	298	포 천	385	545	160
동두천	322	456	134	여 주	324	459	135
안 산	858	1,215	357	연 천	337	477	140
구 리	359	508	149	가 평	346	490	144
남양주	810	1,147	337	양 평	404	572	168
오 산	359	508	149	경기도	26,601	26,603	2

* 자료: 행정자치부

-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에 따라 과천, 고양을 제외한 4개 불교부단체는 3,275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
 - 정부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간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세 전환 및 공동세원화 방안을 추진 (배분기준은 ① 재정력, ② 인구수, ③ 재정력+인구수, ④ 균등배분 등)
 - 법인지방소득세를 100% 도세 전환 시 경기도 본청의 재원은 현 4조 8,421억 원에서 6조 3,094억 원으로 1조 4,673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표 4〉 법인지방소득세의 道稅 전환 시 경기도 및 수원시 세수 변화

(단위: 억원)

구분	경기도 본청 자원		
	현행	변경	증감
배분액	48,421	63,094	14,673

- 공동세원화 방식은 법인지방소득세 중 일정부분(50%)을 공동세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기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 공동세를 제외한 나머지 50%에 대하여 현 배분기준에 따라 시군에 분배한다고 가정할 때, 6개 불교부단체 중 4개는 총 3,275억 원의 세수가 감소

〈표 5〉 법인지방소득세의 변화에 따른 불교부 단체 세수 변화

(단위: 억원)

구분	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
현행	2,337	337	1,230	1,821	3,023	39
개정	1,401	401	848	1,143	1,744	252
증감	△936 (△40%)	64 (19%)	△382 (△31%)	△678 (△37%)	△1,279 (△42%)	213 (539%)

□ 개혁안은 경기도 전체 세수의 감소는 없으나, 시군별 세수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세의 감소가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되는데,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인해 보통교부금이 삭감
 - 6개 불교부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25개 시·군은 재정력 지수의 변화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게 되어 경기도 전체적으로 3,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
- 결국 지방재정개혁을 통해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정부안은 경기도 재정지원을 줄여 타 자치단체에 주겠다는 朝三暮四식 개선안에 불과
 - 본래적 의미의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의 강화는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기준선 이하의 자치단체에 추가적 재정지원을 의미
- 현 지방재정개혁은 정부의 지방재정지원 총액을 유지한 상황에서 분배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6개 시군 등 경기도 재원을 뺏어서 지방에 주는 것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의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자동차세 개정으로 인한 道 및 31개 시군의 예산 변화는?

□ 자동차세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총 세수는 약 2,17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정부는 자동차세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과거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자동차세 개정안을 기준으로 경기도의 세수변화를 추정
 -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에 따라 세율은 기본액에 추가하여 초과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

〈표 6〉 지방세법(자동차세) 개정안 신규조건 대비표(심재철 발의안)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자동차가액	세율	자동차가액	세율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3천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의 1만분의 18	1천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 4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만4천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9)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4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3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2,500CC 이하	19원			5천만원 초과	9만2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24)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8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00CC 초과	24원					5천만원 초과	68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추정방법)**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방식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기도 데이터를 연계하여 추정
 -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세정감면, 국토부 자동차등록현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수입자동차협회의 배기량별 평균가격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
 - 활용된 배기량별 평균가격과 경기도의 데이터, 그리고 비과세감면, 선납할인 등 자동차세와 관련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추계
 - ⇒ 자동차세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비과세감면기준이 적용되며,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2.5%에서 최대 10%까지 할인을 적용받음
 - ⇒ 비과세 감면액은 경기도 감면액과 비과세 감면 기타 항목 중 경기도 안분 추정액을 합산
 - ⇒ 선납할인액의 규모는 공개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개정전 비율이 유지되는 것을 가정
 - ⇒ 경기도의 경우 2014년 기준 징수율은 94.2%(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 94.1%)
- **(추정결과)** 경기도의 자동차세 개정에 따른 세수변화를 추정한 결과 2,17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
 - 외산차량은 1,166억 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국산차의 경우 차량가격이 낮아 4,22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 이에 총 추정세액은 개정전 1조 458억 원에서 개정 후 7,757억 원으로 2,701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 비과세감면, 체납, 선납할인 등을 고려한 최종 징수액은 개정전 8,403억 원에서 개정 후 6,232억 원으로 2,17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

〈표 7〉 자동차세 변화에 따른 경기도 세수 변화 추정

(단위: 억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증감액
추정세액(A)	10,458	7,757	△2,701
비과세 감면(B)*	1,537	1,140	△397
부과액(C=A-B)	8,920	6,616	△2,304
체납 및 선납할인액(C-D)*	517	384	△134
징수액(D)	8,403	6,232	△2,170

□ **현 자동차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자동차세 개정에 따른 시군의 세수변화를 살펴보면, 최소 10.5억 원에서 최대 190.8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

- 경기도 전체 자동차세 감소분에 대해 현 징수액을 기준으로 시군별 변화를 추정한 결과, 8개 시에서 100억 원 이상의 감소가 예상됨
 - 용인시의 경우 190.8억 원으로 감소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수원(183억 원), 성남(154.2억 원), 고양(141.4억 원) 등이 세수감소가 큰 것으로 추정

- 반면 가평, 양평, 연천 등 군단위에서는 감소액이 10.5억 원에서 43.6억 원으로 규모는 크지 않으나, 재정규모를 고려하면 피해의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표 8〉 자동차세 개정에 따른 시군별 세수 전망 추정

(단위: 억 원)

구분	세수 감소액	구분	세수 감소액	구분	세수 감소액	구분	세수 감소액
수 원	△183.05	부 천	△106.90	시 흥	△79.83	광 주	△95.23
성 남	△154.20	광 명	△47.27	군 포	△52.69	양 주	△31.58
고 양	△141.37	평 택	△92.72	의 왕	△26.20	포 천	△40.13
과 천	△10.08	동두천	△11.98	하 남	△22.68	여 주	△52.46
용 인	△190.79	안 산	△111.44	파 주	△71.69	연 천	△43.55
화 성	△118.10	구 리	△24.13	이 천	△50.95	가 평	△10.48
의정부	△51.34	남양주	△83.50	안 성	△48.87	양 평	△16.52
안 양	△110.62	오 산	△34.31	김 포	△56.34		

3 자동차세 개정으로 인해 감소하는 지방교육세의 규모는?

□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 중 시군세에 해당하나, 부가세 형태로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의 감소가 예상됨

- 증가하는 자동차세에 따라 지방교육세는 65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에 부가세 형태로 자동차세의 30%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자동차세 개정에 따라 지방교육세 또한 감소가 예상되며, 규모는 65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 9〉 자동차세 변화에 따른 경기도 세수 변화 추정

(단위: 억 원)

구분	개정전	개정후	증감액
자동차세 징수액(A)	8,403	6,232	△2,171
지방교육세(A*30%)	2,521	1,870	△651

- 누리과정예산 등 교육재정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가 전망되고 있는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자동차세의 규모는 경제 상황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3년간 연평균증가율 1.87%) 이를 통한 지방교육세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4 자동차세 개정으로 인해 감소하는 지방교육세의 규모는?

□ 지방재정개혁과 자동차세 개정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경기도는 총 5,82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재정개혁으로 인한 보통교부금(3,000억원), 자동차세 개정(자동차세 2,170억 원, 지방교육세 651억 원) 등 총 5,821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지역별 세수 감소분은 화성시가 3,014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수원(1,862억원), 용인(1,845억 원) 성남(1,416억 원) 등 4개 시의 세수 감소가 1천억 원 이상임

〈표 10〉 지방재정개혁 및 자동차세 개정에 따른 시군별 세수 전망 추정

(단위: 억원)

구 분	세수 증감액	구 분	세수 증감액	구 분	세수 증감액	구 분	세수 증감액
수 원	△1,862	부 천	301	시 흥	156	광 주	93
성 남	△1,416	광 명	191	군 포	129	양 주	142
고 양	△754	평 택	205	의 왕	101	포 천	120
과 천	△175	동두천	122	하 남	153	여 주	83
용 인	△1,845	안 산	246	파 주	173	연 천	96
화 성	△3,014	구 리	125	이 천	123	가 평	134
의정부	203	남양주	254	안 성	101	양 평	151
안 양	191	오 산	115	김 포	163		

* 6개 불교부단체는 조정교부금 분배기준 + 법인지방소득세 + 자동차세 모두를 고려하였으며, 나머지 25개 시군은 자료의 한계상 조정교부금 분배기준 + 자동차세 두 가지만 고려

- 6개 불교부단체는 '16년 예산기준 재정규모 대비 평균 8.51%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화성시의 감소율은 15.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표 11〉 경기도 내 6개 불교부단체의 지방세수입 변화

(단위: 억원)

구분	재정규모('16년 기준)	세수감소액	감소율(%)
수원	23,581	1,862	7.90
성남	25,730	1,416	5.50
고양	15,561	754	4.85
과천	2,898	175	6.04
용인	19,452	1,845	9.48
화성	19,262	3,014	15.65

Ⅲ. 경기도 대응 방안

1 자체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지자체간 공동대응 모색

□ 현재 중앙정부 사업 대비 지자체의 자체복지사업 예산 비중은 12.1%에 불과하나, 세계개편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이 비중은 더 축소될 것

- '13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예산은 53조 5천억원이나, 지자체 자체사업은 6조 5천억에 불과
 - 단순히 사업수로만 살펴보면 중앙(360개)에 비해 자치단체 자체사업(5,891개)이 16.4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예산 규모를 보면 자치단체 자체사업은 중앙정부의 12.1%에 불과한 실정
 - 이를 단위사업 당 예산으로 계산해 보면 중앙정부 1,485억 원에 비해 자치단체 자체사업은 11억원으로 사업규모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음
 - 결국 자치단체 자체복지사업의 낮은 예산 규모는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강조되는 현 사회복지사업의 기초와 역행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세계개편의 손실은 모두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중앙-지방간 국고 보조사업보조율의 개편과 함께 자체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간 공동대응이 필요
 - 사회복지사무의 67.73%가 국가사무이지만,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중앙-지방이 매칭방식으로 충당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고려 필요
 - 국세 對 지방세 비중을 현재 8:2에서 6:4까지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부족한 자체복지사업 예산 확충을 위한 17개 지자체간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

2 경기도 세수의 안정성 유지에 대한 對정부 건의

□ 현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경기도와 타 지자체와의 갈등구조에서 탈피하여, 국가 재원의 지방이양으로 논쟁의 방향을 전환

- 현 논쟁은 6개 시군을 포함한 경기도와 16개 시도 간 대립 양상으로 비춰져 지역이기주의 오해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본질적 문제인 지방의 재정부족(악화)의 문제로 논의의 중심을 이동시킬 필요성이 높음

- 경기도는 지방재정개혁(안)으로 인한 재정력변화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감소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 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확대 전략(시도지사협의회 권고안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 현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는 국고보조사업, 지방소비세, 보통교부세 등에서 재원의 지방이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서 기인함을 주장
 - 국고보조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적 이해와 정책결정에 의해 지방이 수행하는 위임사무로 '비용의 국가부담'이 기본 원칙
 - 지방소비세 도입 시 정부가 약속했던 10%확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현 6%인상분은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보전 분으로 보는 것이 합당)
 - 보통교부세 교부율 인상약속(19.24% → 20%)의 이행과 증가하는 복지재원 등을 위해 교부율을 상향 조정(정의당 24.24%)할 것을 적극 건의
- 추가로 향후 지방세 비과세 감면조치를 철회하여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세액공제 축소 등을 통한 복지사무의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검토
 - 지방세 비과세는 지방정부의 의견보다는 중앙정부 독자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므로,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해 철회를 적극 검토
 - 또한 국세 중 대기업 등 특정계층에게 집중되어 있는 소득세·법인세의 세액공제 축소 등을 통해 지방사회복지세 또는 사회복지교부금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지방이양

〈표 12〉 새로운 세원의 복지재정 활용방안(예시)

구분	유형(기준)	주요 내용
지방이양 방식	지방사회복지세 신설	- 증가된 세수 중 지방분을 부가세(surtax)인 '지방사회복지세'(가칭)로 이양하되, 해당 세목은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로 운용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 증가된 세수 중 지방분을 포괄보조금 성격의 '사회복지교부금'(가칭)으로 이양함으로써, 기존의 분권교부세를 확대·계승
지역간 합리적 배분기준 정립	징수액 기준	- 징세지 원칙, 즉 지역별로 징수된 세액 비중에 따라 지역별 배분
	복지재정 지출 기준	- 사회복지지출에 사용될 재원임을 고려, 지역별 복지재정 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지역별 배분
	교부세 배분기준	- 지역간 재정형평성을 고려한 기존의 분권교부세 배분 기준 등을 활용해 배분

3 자동차세 개정(안)의 세율 인상 건의

□ 자동차가격 기준 자동차세 부과 개정 목표는 공감하나, 현 자동차세의 총 규모는 유지할 수 있도록 세율 인상을 적극 건의

- 국산 및 외산 차량의 현재 비율이 9:1임을 감안하여 국산차의 자동차세 인하 폭을 줄이고, 외산차의 인상폭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총 자동차세 세수 규모를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
 -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시군세로 중앙정부의 지방세 개편의 효과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가 되는 구조로 중앙정부는 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없음
 - 이에 중앙정부는 국민들(자동차 소유주)의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해 세율 인하를 단행하려 하는 만큼, 경기도의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책 마련 또는 총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율 인상을 적극 건의
-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보육대란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세 감소에 대한 보전책 마련을 적극 건의

□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혹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절차 마련

-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정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전 협의 절차를 명문화
 - 현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을 신설,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반대의 상황에 대한 조항은 없음
-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의 제도 변경 및 신설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요구

1) 사회보장법 제26조 (협의 및 조정) ②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